

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자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센터 신축안을 충청북도 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으나
- 비즈니스센터 신축과정에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혁신도시 내의 C1블럭에서 클러스터용지(클7)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·처분

《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변경》

- 위 치 : 진천·음성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(클7)
- 사업규모 : 부지매입 3,200m². 건물신축 지하1층/지상3층 660m²
- 사업기간 : 2012. 1 ~ 2013. 12
- 사 업 비 : 2,000백만원(도비 100%)

※ 변경내역

- 위 치 : 진천·음성 혁신도시 C1블럭 → 클러스터용지(클7)
- 신축규모 : 600m² → 660m²
- 변경사유 :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무산에 따른 신축위치 변경

4. 검토의견

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무산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C1 블록에서 클러스터용지(클7)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부. 끝.